

### 97.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안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7. 9. 19.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7. 9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(97. 9. 26.) 상정 및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97.영세민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보증 채무를 하고자 함.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나. 주요골자

97.영세민전세자금을 용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 요구함.

1) 자 금 명 :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

2) 지급보증 금액 : 238백만원

3)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소사동 46-6 김덕수 외 54 총 55가구(원미구 23가구, 소사구 13가구, 오정구 19가구)

4) 융 자 금 지 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 부천남지점)

5) 상 환 방 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

6) 이 율 : 연리 3%

7) 지급보증기간 : 2년간(단,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8) 남 은 배 정 액 : 1,800만원은 추후신청자 우선순위 순 지원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받은 97.영세민전세자금 제2차분 238백만원을 관내 도시 영세민에게 주택은행을 통한 용자시 동 융자금의 결손 보전을 위한 보증채무를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행정절차임.

○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,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없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97.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

의안번호	제318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안년월일:97. 9. 19.

제안자: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97.영세민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용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,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.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□ 주요골자

97.영세민전세자금용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함.

가. 자 금 명 : 영세민 전세자금 용자금

나. 지급보증금액 : 238백만원

다.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소사동 46-06 김덕수 외 54 총 55가구 (원미구 23가구, 소사구 13가구, 오정구 19가구)

라. 융 자 금 지 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 부천남지점 등)

마. 상 환 방 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

바. 이 율 : 연리 3%

사. 지 급 보 증 기 간 : 2년간(단,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아. 남 은 배 정 액 : 1,800만원은 추후신청자 우선순위 순으로 용자지원

3. 제안본문

제 목 : 97.영세민전세자금용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승인

가. 목 적

-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전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용자지원코자 함.

나. 지원방법

- 용자지원 규모 : 238백만원(97.부천시 2차 배정액)

(※ 세원 :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)

○ 용자대상

-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
- 전세금 2,000만원 이하 (용자금 포함 2,400만원 이하)인 전세입자

○ 가구당 지원액 : 400만원 한도 내

○ 대출금리 : 연리 3%(본인부담)

- 상환조건 : - 2년 이내 일시상환 (전세 재계약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)
- 자금관리 :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

○ 구별 자금 배분액

구 분	배 정 액
계	238,000천원
원 미 구	102,000천원
소 사 구	76,000천원
오 정 구	60,000천원

다. 용자실시 방법

- 용자업무 취급기관 : 주택은행 부천지점 외 9개 점포
- 시행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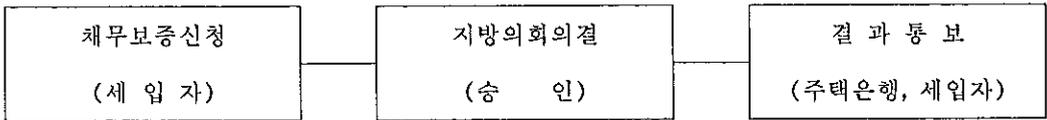
- 신청접수 : 97. 6. 30~7. 14. (각 동)
- 개별실태조사 : 97. 6. 30~7. 14. (각 동)
-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: 97. 7. 21. 까지 (각 구청)
- 지방의회의결 : 보증채무 승인 행위 승인
- 대상자 통보 : 의회 의결 후
- 용자실시 : 97. 9.~11. 30.

○ 용자계약체결

- 계약당사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
- 보 증 인 :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용자신청
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

라. 채무이행 보증절차

-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



○ 채무보증 내용

- 전세자금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존 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서
-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 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방문 확인한 후
-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소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
- 부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

마. 기타사항

-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용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,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.
-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용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.

### 채 무 보 증 신 청 서

한국주택은행 지점장 귀하

부 천 시 장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 :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

2. 내 용

가. 채 권 자 : 주택은행장

나. 채 무 액 : 238백만원

다. 이 자 율 : 연 3%

라. 상환기간 : 자1997. 10. 지1999. 11. 2년간 (1회에 한하여 연기제계약)

마. 상환계획 : 2년 이내 일시상환

3. 사 유

가. 주채무 발생 :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돕기 위한

나.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: 저소득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융자

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: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

4. 준수사항

가.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에서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,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#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

귀하

부 천 시 장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에서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1. 주채무자 :
2. 채무건명 :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
3. 채 무 액 : 400만원
4. 이 자 율 : 연 3%
5. 상환기간 : 자1997. 10. 지1999. 11. (1회에 한하여 연기 재계약)
6. 상환재원 : 신청자부담-원금, 상환이자의 3%
7. 용자재원 : 238백만원
8. 관계기관 : 한국주택은행
9. 채무보증근거 :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
10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다. 시장은 시에서 보증한 채무에,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계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마. 채권자는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바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